

IV

정책제언 및 산업전략

1. 정책제언

- 가입자 중심의 수탁자 책임 체계를 강화하여 계약형 중심의 퇴직연금이 전문적 자산관리와 장기투자가 가능한 구조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
 - 계약형은 디폴트옵션, 전문운용서비스 등을 통해 가입자의 운용 의사결정 부담을 완화하고 자산배분 및 위험관리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
 - 기금형은 도입 과정에서 수탁자 책임(Fiduciary duty)에 기반한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, 기금 대형화와 집합운용을 통해 규모의 경제와 장기투자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
- 정부와 감독당국은 퇴직연금이 단기 안정성 중심의 운용구조에서 벗어나 가입자 이익과 장기 지급능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장기수익률 제고와 생산적 금융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장기·분산투자 중심의 자산운용 체계로 전환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
 - 실적배당형 상품, TDF, 대체투자 등 장기투자 자산의 비중을 확대하고, 장기성과 및 위험조정수익률 중심의 평가체계를 강화하여 장기 자산형성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
 - 연금자산이 인프라, 부동산, 성장기업 등 생산적 자산에 투자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, 보험회사·연기금 등 전문기관의 장기투자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
- 퇴직연금을 단순한 노후저축 제도에서 노후소득보장과 노후생활보장을 포괄하는 종합적 노후보장 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한 개편이 필요함
 - 중도인출과 해지에 따른 적립금 누수를 완화하고, 연금수령에 대한 세제지원 및 제도적 유인을 강화하여 적립금이 안정적인 노후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
 - 또한 주요국 사례와 같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활용하여 연금보험, 장수리스크 관리 상품, 사망·장해·장기요양 등 보장성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, 투자와 보장이 결합된 종합적 노후보장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
 - 다만 보장성 상품의 편입은 안정적인 노후소득 재원 확보를 전제로(노후소득 안정화 우선), 보험료 부담과 기존 보장과의 중복을 고려하여 대상과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

2. 보험산업의 전략

- 보험산업은 단순한 퇴직연금 사업자를 넘어 노후소득보장과 노후생활보장을 제공하는 종합 노후보장 사업자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
 - 자산운용 성과와 비용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연금보험, 장수리스크 관리, 사망·장해·장기요양 보장 등 보험산업 고유의 위험관리 기능을 결합한 차별화된 연금 솔루션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
 - 특히 적립단계의 자산운용과 인출단계의 연금화 기능을 연계하고,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위험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소득보장을 넘어 노후생활보장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
- 보험산업은 장기보험·연금부채와 자산·부채관리(ALM) 역량을 바탕으로 타 금융업권 대비 장기투자에 비교우위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, 이를 활용하여 장기투자기관으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
 - 원리금보장형(GIC) 중심의 사업구조에서 벗어나 실적배당형 상품, TDF, 대체투자 등으로 운용영역을 확대하고 장기수익률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
 - 또한 장기보험·연금부채와 안정적인 현금흐름 자산 간의 연계를 통해 인프라, 부동산, 사모대출 등 장기투자 자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부채와 자산의 현금흐름 적합성, 신용위험과 유동성을 관리하면서 장기 위험조정수익률을 높일 필요가 있음
- 보험산업은 생산적 금융 공급자로서 연금자산과 실물경제를 연결하는 핵심 장기자본 공급자로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
 - 퇴직연금과 연금보험을 통해 축적된 장기자금을 활용하여 인프라, 에너지, 성장기업 등 생산적 자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, 노후소득보장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지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
 - 특히 영국 사례와 같이 연금보험 기반의 장기자금을 활용하여 생산적 금융을 확대하고, 연기금·자산운용사와의 협력을 통해 장기투자 및 대체투자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